

# 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도시번호	도계415	(연차번호)	권결규정 부디정전전사합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2부시장 전결 도시질서국장 도시계획국장	지역계획국장 김. P. 조병현	법무담당관 심사관
기안책임자	장석호	조	가로계획국장 홍
경수합	유신조 각안 참조	발신	시 장 공 검열 제 1078.04
제 목	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.		
제1안 내부 결재			
1. 서울시 도시 제108호(76.5.7)로 실시 계획 안과 원바 있는 종로구 동숭동 1-13호(구사동분리대부지) 주택공사 단지 (시행자: 대한주택공사 사장 양택식)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종로구청장으로 부터 용 완료 되었다는 준공 보고서가 제출 되었기 도시 계획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공고 하고 준공 검사증을 교부코저 합니다. 그 준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			
구 분	인가면적	준공면적	비
택 지	57.62㎡	50.723 <sup>20</sup> ㎡	감 897.20㎡
도 로	10.61P	11.083 <sup>20</sup> ㎡	증 464.20㎡
공원및녹지기타	7.685	7.634 <sup>20</sup> ㎡	감 50.20
· 계 ·	69.925㎡	67.657 <sup>20</sup> ㎡	감 223.20㎡

0201-1-8A (4)  
1959. 11. 10 승 인

5062

190mm×268mm 인쇄용지 (2급) 60g/㎡  
시 립 소 년 기 순 원(92-0436)

정서  
판인  
발송

제2안 공고안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 
도시계획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완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08호(76.5.7)로 실시계획 인가  
권나 있는 도시계획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(동송지구  
주택공사 단지) 이 공사 완료 되었기 도시 계획법 제25  
조 제항 및 증법 제4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과  
행정 처분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의거  
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.

2. 관계 도시우 서울특별시 도시 정비부 도시계획과와  
종로구청 시민봉사실과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 
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

공고안번호	76.10.2 제 213호
심사자	정우연
주청	정우연

1, 176. 1  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 시행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송동 1의13외 1필지
- 2. 사업 명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
(동송지구 주택공사 단지)
- 3. 준공 면적: 6,165.20㎡ (인가면적: 8,125㎡)
- 4. 사업 시행자: 대한주택공사 사장 양택석
- 5. 사업 기간: 착공 76.5.7  
준공 76.1.1
- 6. 준공 도면: 별첨 인공도면 (생략)

제3안 준공 검사증 안

준공 검사증

- 1. 사업 시행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송동 1의13외 1필지
- 2. 사업 명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(동송지구 주택공사 단지)

3. 준공 면적: 6P. 6C. 20㎡ (인가 면적 6P. 9A. ㎡)

4. 인가 번호 및 일시: 서울특별시 고시 제108호(76.5.7)

5. 사업 시행자: 대한 주택공사 사장 양택석

6. 준공 내역: 별첨 준공 인공도면

위와 같이 도시 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별첨 준공 인공도와 같이 준공 되었으므로 본증을 피부함

76 P.  
서울특별시장

제4안

수신 대한 주택공사 사장 양택석

제 목 등 건

1. 귀하께서 종로구청에 제출하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검사청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준공 조치 하였으나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한후 공공시설을 도시 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당시에 취소 되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준공 영수분 사본 1부

준공 검사증 1부

드면 1부

제5안

수신 종로구청장 (토목과장)

제 목 등 건

1. 토목 415-225호(76.5.23)의 환연임.

2. 귀 환연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(동승지구 주택공사 단지)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준공 영수 하였습니다. 통보 하나. 환연과에 통보 하나 취소. 업무 처리에.

착오 없기 바랍.

첨부: 준공 공고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6안

수신: 수신처 참조

발신: 과장

제목: 등 건

1. 당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되바 있는 종로구 등운동 (구 서울분리대부지) 1의13외 1필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준공 되었기 등보 하오 본 단지에 시선통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준공 공고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수신처: 도로보수과장, 하수과장, 공원과장, 관재과장, 급수과장

제7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제목: 등 건

1. 도계415- (76. ) 및 도계415- (76. )의 관련입니다.

2. 당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 인가 되바 있는 종로구 등운동 1의13외 1필지 (구 서울분리대부지)에 대하여 공사 완료 되었기 보합니다.

첨부: 준공 공고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8안

수신: 총무처.장관 (서: 문화공보실장) . 발신: 서장(과장)

제 주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 하오니  
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게재 구분: 공고

나. " 게재 건명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공고

다. 법령 근거: 도시계획법 제46조 제3항

첨부: 공고본 사본 2부 (1부) 끝.

5066